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가단571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.53분의 0.993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. 9. 5.자 13번 소유권경정등기(순위번호 13-2호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병구

별지